

서울고등법원 2021. 9. 15 선고 2021나2004800(본소), 2021나2004817(반소) 판결

[매매대금 · 용역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피고,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현기, 조건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이명의, 최지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은혜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15.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가합540942(본소),

2019가합585884(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92,5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1. 기초 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표 아래 1 내지 3행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할 원고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금액을 117,031,000원으로 증액하는”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표 아래 4행 “102,942㎡(” 다음에 “원고 소유,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행 “102,972㎡”를 “102,942㎡”로 고쳐 쓴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2. 본소에 대한 판단”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0행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추가토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마지막행 “각 기재”를 “각 기재 및 음성”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5, 16행 “2개 필지를 추가(이 사건 추가토지)”를 “2개 필지(이 사건 추가토지)를 추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9행 “6 내지 8호”를 “6 내지 8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4행 “갑 제22, 33, 34호증”을 “갑 제22, 33, 34, 38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17행 “원고로부터”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20행 “갑 제23호증의 기재”를 “갑 제11, 23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1)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사업부지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3. 2. 15.자 계약변경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부지 면적이 포함된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3. 2. 15.자 계약변경합의를 하였는바, 피고 C가 당초 사업면적 270,818㎡보다 증가한 전체 사업면적인 330,149㎡를 기준으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한 이상, 원고는 피고 C에게 2013. 2. 15.자 계약변경합의에 따른 용역대금 117,031,000원 중 이미 지급한 계약금 24,4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2,551,000원(= 117,031,000원 - 24,480,00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2013. 2. 15.자 계약변경합의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변경 전 계약인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는 피고 C에게 용역대금 잔금으로 적어도 57,120,000원(=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81,600,000원 - 계약금 24,480,00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 C는 천안시 동남구 F리 채석단지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C의 위 용역의무는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 C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

1) 2013. 2. 15.자 계약변경합의는 원고의 사업부지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인데, 원고의 사업부지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변경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2013. 2. 15.자 계약변경합의가 정지조건부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변경합의는 2014. 4.경 합의해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3) 피고 C는 임의로 사업면적을 확장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동일성이 없는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 판단

먼저 2013. 2. 15.자 계약변경합의가 원고의 사업부지 면적이 증가됨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3. 2. 15.자 계약변경합의 당시 원고의

사업부지 면적이 199,301㎡ 증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할 기술용역대금을 증액하고, 피고 B의 사업부지 면적이 149,455㎡ 증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B이 피고 C에게 지급할 기술용역대금을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C는 원고의 사업부지 면적은 증가하지 아니하고 피고 B의 사업부지 면적만 일부 증가된 전체 사업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였으므로, 2013. 2. 15.자 계약변경합의 중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할 기술용역대금이 증액되도록 하는 부분의 조건은 성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94701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피고 B이 환경영향평가를 취하게 된 주요 원인은 관할청이 석면 평가의 신뢰성 부족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던 점, 원고는 환경영향평가를 취하한 이후에도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임을 표시하면서 공동사업자인 피고 B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통행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정도로 피고의 위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의 위 용역의무 이행이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위 기술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현, 판사 박성준, 판사 천지성